



SINCE 1985

KOREAN AMERICAN INSURANCE & FINANCIAL
미주 한인 보험 재정 전문인 협회
PROFESSIONAL ASSOCIATION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포스터 한국어 번역

Law Offices of Elliott Kim 제공

HEALTHY WORKPLACES/HEALTHY FAMILIES ACT OF 2014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법

자격:

- 2015년 7월 1일을 시작점으로 1년 이내에 30일 이상을 캘리포니아에서 일한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 유급병가는 종업원이 매 30시간 근무시마다 1시간씩이 적립되며, 사용한 유급병가에 대해 해당 종업원의 정규 시간당 임금으로 지불됩니다. 적립 시작일은 2015년 7월 1일부터이며, 그 이후 고용된 직원은 고용 시점부터 적립이 시작됩니다.
- 적립된 유급 병가는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나 총 적립가능 시간은 48시간 혹은 6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1년에 24시간 혹은 3일 이상을 종업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나 유급병가 회사정책을 이미 시행중이라면, 추가적으로 유급병가를 적립하거나 이월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정책은 해당 종업원의 고용일 기준으로 1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24시간 혹은 3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용:

- 종업원은 고용된지 90일째부터 적립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종업원의 구두요청이나 서면요청에 따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급병가는 종업원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진단, 기존 건강상태에 대한 관리나 치료, 예방치료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종업원의 1년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또는 3일로 유급 병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하거나, 요청하고 사용한 종업원에 대한 보복 또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종업원은 보복하거나 차별한 고용주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SINCE 1985 미주 한인 보험 재정 전문인 협회

P.O. Box 761399, Los Angeles, CA 90076 Tel: (213) 598-4270 www.kaifpa.org



KOREAN AMERICAN INSURANCE & FINANCIAL
미주 한인 보험 재정 전문인 협회
PROFESSIONAL ASSOCIATION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고용주 또는 노동청 지역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노동청 사무실은 웹사이트 <http://www.dir.ca.gov/dlse/DistrictOffices.htm> 에서 알파벳 순서로 표시된 시나 지역 명칭을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직원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Korean translation was made based on DLSE Paid Sick Leave Posting (11/2014) . This translated vers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bout legal matters, and it is not a legal advice. The information in this Korean Poster is provided “as is” without any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The Law Offices of Elliott Kim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ies in relation to the accuracy of legal information and this translation. You must not rely on the information on this Korean translation as an alternative to legal advice from your attorney.